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3
----------	------

제출연월일: 2019. 5.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2019. 7.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 개정
-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개정

##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근거 명시(안 제5조의2)
-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명시(안 제5조의3)
- 다.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명시(안 제10조, 제10조의2)
-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명시(안 제26조, 제26조의2)
- 마. 시장관리자 취소 처분 절차 명시(안 제33조, 제33조의2)
- 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명시

(안 제34조의2)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7조의2, 제24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있음(여성가족과-19184호, 2019. 5. 3.)

- 의견 반영 여부

제출의견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 제23조(상인회의 설립)와 관련하여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균형 참여에 관련한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p style="text-align: center;">&lt; 불수용 &gt;</p> 조례상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인회는 시장자체 정관에 의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라. 입법예고: 2019. 4. 29.~5. 20.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08호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상인 조직”을 “상인조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장의 인정취소)”를 “(시장의 인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으로, “시장의 인정요건”을 “요건”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시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를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의 인정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

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상인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상인회의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를 “청문 절차를 거쳐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의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로, “청문절차를 거친다”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7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

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을 “상인조직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 번으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 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을 “상인조직 또는”으로 한다.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조직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  
-----  
-----  
-----  
-----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요건-- 때에는 시장의 -----.

② -----  
-----  
-----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생략)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 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생략)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 제1항-----  
-----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

-----  
- 청문 절차를 거쳐야 -----  
--.

제2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의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 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인조직 및 -----



<p>관리 조례」에 따라 <u>영 제3조에</u> <u>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u> <u>제2항에 따른</u>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 <u>상인조직 또는</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근 거 법 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b>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20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경제산업과	
	담당자명	장혜강	전화번호 052-290-33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4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산업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의 주요내용은 용어 및 문구 수정,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근거 명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명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명시, 상인회의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명시, 시장관리자 취소 처분 절차 명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명시 등임.</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조례 개정안 제23조(상인회의 설립)와 관련하여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균형 참여에 관련한 조항이 누락되어있음.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③ 상인회 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 ② (생략) < 신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인회 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상인회 임원 성별구성비율과 관련하여 상위법 준수 요망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5월 2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03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경제산업과장 귀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20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경제산업과		
	담당자명	장혜강	전화번호	052-290-332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조례 개정안 제23조(상인회의 설립)와 관련하여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균형 참여에 관련한 조항이 누락되어있음.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p>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p>조례상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인회는 시장자체 정관에 의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p>
---	---	---	--

2019년 05월 14일

**경제산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가.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나.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나.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가. 소 속: 경제산업과
- 나. 이 름: 장혜강
- 다. 직 위: 행정7급
- 라. 연 락 처: 290-3313